

## 객관적 評價로 휴직을 制度化하자

李 振 馥

(建國大 行政學科)

대학교수의 현실참여를 위한 休職 制度는 보장되고 있는가?

대학교수의 현실참여는 서구 국가에서도 흔히 볼 수 있듯이, 이제 우리나라에서도 普遍化되고 있는 실정이다. 교수직에서 잠시 물러나 국회의원이거나 고위관직 등 사회에 진출하는 경우는 우리에게도 흔히 볼 수 있다. 여기서 다음과 같은 두 가지를 검토하고 그 문제점을 지적하지 않을 수 없다.

첫째, 교수의 현실참여가 우리의 실정에 비추어 볼 때 과연 바람직한 것인가? 교수의 현실참여 贊·反은 여러 측면에서 지적될 수 있으며, 긍정적인 면과 부정적인 면을 모두 공유하고 있다. 체제의 正統性이 문제시되었던 과거에 있어서는 교수의 현실참여는 御用學者라는 낙인으로 커다란 걸림돌이 되었던 것도 사실이다. 그러나 오늘날에 있어서, 예를 들면 정계·제계 및 행정관료 등으로

교수들이 진출하는 것이 어색하게 보이는 시대는 지나간 과거로 여겨지고 있다. 또한 현실참여를 원하는 교수들도 과거와 같이 사회 각계로의 진출을 그렇게 간절하게 기대한다고 볼 수도 없다.

둘째, 교수들이 현실참여를 할 경우 일시적으로 그만두게 되는 敎授職은 차후에도 보장되어야 하는 것인가? 즉, 일시적으로 자리를 그대로 비워두고 그 교수가 다시 돌아올 수 있는 기회를 보장해야 할 것인가 하는 점이다.

위의 두 가지는 별개의 문제라고 볼 수는 없다. 교수의 현실참여를 어떠한 경우가 되었건간에 전면일률적으로 볼 수는 없으며, 이에 따라 휴직제도 역시 동일하게 적용될 수 없기 때문이다. 따라서 교수의 현실참여를 위한 휴직제도는 參與의 형태에 대한 評價에 따라 달라져야 할 것이며 현재의 휴직

제도에 대한 문제점도 이러한 차원에서 해결책이 모색되어야 할 것이다.

### 權力指向? 社會奉仕?

현대사회는 무엇보다도 專門性이 강조되고 있는 사회이다. 과거에는 전문지식이었던 것이 사회가 변화함에 따라 그것이 상식에 불과해지는 시대에 우리는 살고 있다. 대학은 전문적인 학술연구·교육기관으로서 이러한 사회의 변화에 부응하지 않을 수 없다. 즉, 전문인을 양성하는 대학에서는 우선 전문성이 높아야 되며, 하물며 강의하는 교수에게는 전문성이야말로 가치 생명이라고 해도 지나친 말은 아닐 것이다.

또한 지식은 상아탑에만 머물러 있을 수는 없는 것이다. 상아탑에만 머물러 있는 지식은 방법론상 중요한 기준이 되는 現實 適用性(relevancy)이

없으므로 지식이라고 하기에는 우리가 따른다. 거꾸로 실용성의 지나친 강조는 과학의 발전을 더디게 한다. 그러나 사회과학의 영역에서는 상대적으로 현실성이 보다 강조되지 않을 수 없으며, 상아탑의 지식은 실현될 수 있는 메커니즘을 필요로 한다. 산학협동이 강조되고 대학교수의 현실참여가 정당화될 수 있는 것도 바로 전문성과 지식의 현실적용성을 높이기 위한 것이다.

그러나 우리는 그동안 대학 교수들이 현실에 참여하는 것을 긍정적으로 보기보다는 부정적으로 보는 견해가 지배적이었다. 이는 다름아닌 참여의 형태와 동기가 문제시되었기 때문이라고 할 수 있다. 그렇다면 대학교수의 현실참여는 어떻게 평가할 수 있을 것인가?

대학교수의 현실참여 동기와 형태를 간단하게 설명하는 것은 상당한 무리가 따를 수 있다. 나아가 이를 평가하는 문제 또한 쉬운 일은 아닌 듯하다. 이는 논리의 전개상 참여 동기와 형태에 의한 분류가 주는 이해의 선명성으로 다소 상쇄될 수 있을 것이다.

대학교수의 현실참여 동기는 간단하게 권력지향성과 사회봉사성 내지 사회비판성으로 구별하고, 형태는 강제성과 자발성으로 구별하여 양자를 결합·분류해 보면 다음과 같이 4가지로 나타낼 수 있다. 권력지향성의 강제적 참여, 권력지향성의 자발적 참여 및 사회봉사성의 강제적 참여, 사회봉사성의 자발적 참여가 그것이다.

權力指向性은 교수가 교수로서의 직분보다는 정치적인 성향을 높게 평가함으로써 낳은 결과라고 할 수 있다. 자기자신은 어쩔 수 없이 참여하게 되었다고 이야기할 수는 있겠지만, 그것은 나름대로의 빌미를 찾은 것에 불과하다. 교수라는 직분은 다른 사회로의 진출을 위한 바탕으로 작용한다. 우리의 경우 모든 국민이 정치에 대단한 관심을 가지고 있으면서도 교수들의 현실참여는 환영받지 못하였다. 특히 권력의 정당성이 문제시되는 경우에는 교수는 물론이고 학자로서의 역할이 비판의 대상이 되었다. 비록 현실참여는 하였을지언정 교수로서의 역할을 양심껏 수행하고 실적이 축적되어 있다면, 처음의 동기는 권력지향성이었지만 이제는 사회봉사성으로 변화되었다고 볼 수도 있다.

반면, 社會奉仕性은 오히려 교수로서의 역할을 보다 적극적으로 수행하고자 하는 결과로 나타나곤 한다. 이는 교수가 국가발전을 위하여 사회를 개혁해 보고자 하는 비교적 순수한 동기라고 할 것이다. 대부분의 교수들은 사회에 봉사하고자 현실참여를 한다고 억지를 쓰며 強辯할 것이다. 여기서 사회봉사성은 적극적인 개념으로 생각해야 할 것이다. 미래지향적인 관점에서 먼 장래를 생각할 때 진정으로 국민을 위하는 방향으로 국가사회에 이바지하고 있느냐 하는 것이다. 사회가 보다 이기적으로 되면서 봉사도 자기자신을 위하는 방향으로 전환되는 경우를

얼마든지 우리 주변에서 발견한다. 그야말로 自己犧牲을 자오하지 않는 봉사라는 것은 명분에 지나지 않는다. 교수의 현실참여가 사회봉사성이 되기 위해서는 이러한 조건들이 충족되어야 한다.

물론 위의 4가지를 현실적으로 엄격하게 구별할 수는 없다. 정치참여의 형태에 있어서 強制的 참여와 自發的 참여는 구별하기 어렵다는 사무엘 헌팅턴의 지적과도 유사하다. 아무리 권력지향적인 교수가 정치에 참여했다고 하더라도 그 자신은 이를 인정하기보다는 사회봉사성 내지 사회비판성을 더 내세울 것이다. 즉, 권력지향성과 사회봉사성, 그리고 강제적 참여와 자발적 참여는 어느 스펙트럼을 띠 수밖에 없는 듯하다. 그러나 사회적 가치의 우선순위는 존재할 수밖에 없듯이 이 두 가지도 우선순위를 생각하지 않을 수 없다.

이제 대학교수의 현실참여는 당위론적으로나 존재론적으로나 부인될 수 있는 것은 아니다. 그렇다고 모든 형태의 참여가 정당화될 수는 없으며, 이는 대학이라는 本質的 性格에 비추어 평가되지 않으면 안 된다. 중요한 것은 맹목적인 비난과 비판은 무의미한 것이며, 또다른 비난과 비판의 맹목성이 꼬리를 물고 뒤따를 뿐이라는 것이다. 사회현실은 目的性에 비추어 판단되지 않으면 안 된다. 따라서 현실참여를 위한 대학교수의 휴직 역시 현실참여에 대한 평가에 따라 달라져야 한다.

## 參與에 따른 評價가 선행되어야

지금까지 현실참여를 위한 대학교수의 휴직이 문제가 되었던 이유는 과연 무엇이었는가? 앞에서 살펴본 바와 같은 참여의 형태와 동기별로 휴직제도의 보장여부를 살펴보고 그 문제점을 추출하기로 한다.

먼저 權力指向性의 강제적 참여는 사실상 실행하기 어려운 경우라고 하겠다. 그러나 권력지향성의 자발적 참여도 실상은 강제적 참여와 더불어 시작되었다고 할 수 있을 것이다. 결국 양자는 同時發生的이라고 할 수 있다. 그동안 우리나라에서는 권력지향성의 현실참여에 대한 사회적 평가와 여론은 매우 부정적이었다. 한국정치의 부정적 측면으로 인한 그와 같은 復職 반대여론과 교수의 학자적 양심에 대한 혹독한 비난은 이해가 되고도 남는다. 따라서 권력지향성 현실참여의 경우는 강제적이었던 자발적이었던 간에 그 기여에 대한 평가를 하기보다는 輿論에 좌우되어 복직된 예는 매우 드물었다. 그러나 교수 역시 인간이기에 인간이 지닌 권력지향성을 무시할 수는 없다. 客觀的 公正評價가 따르는 복직은 보장되어야 할 것이다. 즉, 현실참여 수행 당시의 직책이 아닌 教授에 대한 평가제도가 정착되지 못한 까닭으로 인한 輿論 裁判은 감정적 보복이라고 할 것이다.

한편, 권력지향성인 경우 財

團의 임의에 의하여 휴직보장이 결정되는 일면도 있다. 정부의 대학에 대한 영향력이 그만큼 크다는 것을 의미한다. 여기서 대학교수의 현실참여에 있어서 여당이나 친정부적 성향인 경우와 야당이나 재야성향인 경우에 커다란 대조를 이루어 왔음을 우리는 잘 알고 있다. 전자인 경우에는 복직이 보장되는 것이 상례이지만, 후자의 경우에는 복직은커녕 오히려 현실참여 자체를 방해받게 되었다는 것이다. 물론 그렇지 않은 경우도 얼마든지 찾을 수 있지만, 그것은 한 가지 사례일 뿐이다.

社會奉仕性의 強制的 參與는 형식상 권력지향성의 강제적 참여형태를 빌리는 경우도 있지만, 실질적으로는 다른 경우라고 할 것이다. 비록 타의성이 높기는 하지만, 권력적 속성은 별로 관심이 없고 축적된 研究와 講義의 경험을 기울여보다 적극적으로 국가와 사회에 봉사하겠다는 것이 권력지향성의 현실참여와 동일하다고 할 수는 없는 것이다. 하물며 이러한 경우에도 휴직에 의한 복직이 보장되지 않는다면 국가사회 발전에 크나큰 손실이라고 할 수 있을 것이다. 더욱이 여론제관에 의한 복직 불가능은 더할 나위 없는 것이다.

社會奉仕性의 自發的 參與는 가장 이상적인 경우라고 할 것이다. 사회봉사성이라는 것이 권력지향성과의 혼돈으로 인하여 동일하게 취급될 수 있으며, 자발성이라는 것도 마찬가지로 여겨질 수 있다. 사실상 교수

는 정도차가 있을 뿐 직·간접적으로 사회봉사성의 자발적 참여를 하고 있는 셈이다. 단지 full-time이나 part-time이냐의 차이가 있을 뿐이다. 이러한 경우 현실참여를 위한 휴직보장이 문제가 되어서는 안 된다고 생각한다. 휴직이 보장될 경우 현실참여를 하고 있는 교수의 자리를 비워두어야 하는 학교측의 어려움이 있는 것도 사실이다. 그러나 그것은 齟齬의 妙일 것이며, 상대적으로 사회봉사성의 측면에서 그 중요도가 떨어지는 문제로 보아야 할 것이다.

지금까지 현실참여의 형태와 동기별로 휴직제도의 보장에 대하여 간단하게 살펴보았다. 결국 앞에서도 지적한 바와 같이 公正한 평가제도의 不在와 任意的 휴직보장에 문제의 핵심이 있다고 하겠다. 전반적으로 여러 가지 제도가 정착되지 못한 우리의 실정에 비추어 볼 때, 너무나 당연한 이야기일런지도 모른다. 상황에 따라 혹은 임의적으로 휴직의 보장여부가 결정되면, 현실참여에서 오는 악영향으로 조직 전체가 침해되거나 公私의 구별이 애매해지게 된다. 이렇게 볼 때 대학교수의 현실참여를 위한 休職 制度는 단순히 보장의 차원이 아니라 制度化의 문제인 것이다.

제도화란 조직체나 절차가 가치와 안정을 취득하는 과정으로 組織化·機關化와 병행하여 사용되기도 한다. 헌팅턴은 정치체제의 제도화 수준은 그 체제의 적응력—경직성, 복잡성

—단순성, 자율성—복측성 및 결합성—와해성을 척도로 측정된다고 지적하고 있다. 한편, 밀턴 이스만은 ‘기관화’란 기관형성전략의 출발점이 되는 개념이며 한 조직이 추구하는 임무가 內在化되고 환경과의 교호작용이 정착되는 것이라고 설명하면서, 그 지표로 생존능력, 자율성과 영향력 및 파급효과를 들고 있다.

헌팅턴과 이스만의 지적처럼 제도화 수준과 기관화 지표에 비추어 볼 때, 휴직제도는 매우 낮은 수준에 머물러 있다고 하겠다. 낮은 수준의 정도가 아니라 현실참여와 함께 휴직제도 자체가 문제시되고 있는 실정이라고 할 것이다.

오늘날과 같은 전문화 시대에 있어서 국가사회는 학문의 전문성을 충분히 활용함으로써 자원의 효용성을 높이고 국제경쟁력을 향상시킬 수 있다. 그러기 위해서는 대학교수의 현실참여의 폭이 보다 넓어지고 적극적으로 이루어져야 한다. 단순히 사회적인 지명도가 높은 점만으로는 알맹이 없는 겉질에 불과할 수 있다. 따라서 대학교수의 현실참여에 대한 객관적이고도 공정한 평가는 필수적인 것이다. 이러한 평가를 전제로 한다면 대학교수의 현실참여를 위한 휴직은 보장되어야 하며, 그것은 평가와 더불어 제도화됨으로써 실용 가치가 있는 것이다.

## 현실참여의 視角은 변화되어야

우리의 학문수준과 실무영역은 서로 원활하게 교호작용을 하기보다는 별개의 영역이거나 협력체계가 제대로 형성되어 있지 못하다고 할 수 있다. 학문은 방법론상 實際性이 없으면 무용지물이 될 가능성이 매우 높으며, 해겔의 지적처럼 내용 없는 형식은 공허하고 형식 없는 내용은 맹목적인 것이다. 즉, 그릇과 그릇에 담은 내용물은 조화를 이루어야 한다.

그런데 그동안 우리의 경우 대학교수가 현실참여를 하는 것은 비판과 비난의 대상이 되었던 것도 사실이다. 정치권력의 정당성이 심각한 문제로 제기되면서 禁忌視되어 참여 자체가 커다란 모험이었던 것이다. 우리나라에서 대학교수의 현실참여가 문제시된 것은 바로 한 국정치가 안고 있는 여러 가지 문제와 이에 따른 학자적 양심에 대한 심판 결과라고 할 수 있다. 따라서 대학교수의 현실참여에 대한 문화풍토는 개선되어야 하며, 우리의 시각 역시 변화되지 않으면 안 된다.

우리 정치에 참다운 민주주의가 깊게 뿌리를 내리면 현실참여 자체가 문제시되지는 않을 것이다. 현실참여에 대한 객관적이고 공정한 평가가 따르게 되면 나머지는 교수들이 스스로 알아서 할 일이다. 권력

지향적이라고 해서 반드시 부정적일 필요는 없으며, 사회봉사적이라고 해서 칭찬받을 일만은 아닐 것이다. 객관적이고 공정한 평가만이 이를 현실참여의 참뜻으로 살릴 수 있는 것이다.

이에 대한 후속조치로서 휴직제도 역시 객관적이고 공정한 평가에 따라 보장되어야 할 것이며, 이는 평가와 아울러 제도화되어 보장되는 것이 바람직할 것이다. 제도화되지 못하게 되면 문제는 다시 원점으로 돌아가게 된다. 특혜를 받는 교수와 그렇지 못한 교수간의 갈등은 심화되고 또다른 문제점들이 발생하지 않을 수 없다. 즉, 대학교수의 현실참여 자체에 대한 當否性 여부가 논의되어야 하는 악순환을 밟게 되는 것이다.

이미 대학교수의 현실참여는 세계적으로 보편화된 지 오래이며, 부자연스럽다기보다는 오히려 적극적으로 권장되어야 할 것이다. 단지 이에 대한 評價制度는 객관적이고 공정하게 이루어져야 하며 제도화시키는 것이 바람직하다. 그럴 경우 현실참여를 위한 휴직은 교수로서의 역할수행과 실적의 축적 여부에 대한 평가와 판단하여 보장되어야 할 것이며, 나아가 여론재판 혹은 사적 성격이나 임의적인 행태가 아닌 制度로 보장함으로써 대학교수의 현실참여의 가치는 배증될 수 있을 것이다. ■